



## 기관명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

문서번호 : 부가가치세과 -

○ 수신자 0000상회 대표자 김국세 귀하

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귀하(귀사)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**20 . . .까지**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해명자료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(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, 기한연장 통지를 한 경우 그 기한연장일) 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합니다.

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과세자료 발생 경위

(보기) 이 자료는 귀사의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결과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으로 의심되어 발생한 자료입니다.

○ 과세자료 내용

(단위 : 원)

과세자료명	구분 (매입, 매출)	과세 기간	과세자료 발생처		과세자료금액	비고
			상 호 (성 명)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	

○ 제출할 자료

- 납세자 해명자료(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)
- 관련 증빙서류 (보기) 세금계산서, 계약서, 거래명세표, 금융거래 내역 등

※ 해명자료는 우편이나 팩스, 전자메일, 홈택스(상단 메뉴바에서 「증명·등록·신청」>「세금관련 신청·신고 공통분야」>「일반신청/결과조회」>「국세 민원 서류 찾기」에서 "해명자료" 검색) 중 선택 제출 가능

년 월 일

## 기관장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지방국세청 ○○○과 ○○○ 조사관(전화 : , 전송 : )

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